

1차 감사 결과 보고서

- 구 분: 2025학년도 2학기 정기(결산)감사
- 감사대상: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 담당위원: 감사운영위원장 조연재

■ 1차 감사 결과

- 총학생회비 이중 납부자 명단 미흡
- 일부 세목에 대한 증빙물 상 구매 세부 내역 미비
- 카시오 시계 세목 변경 관련 서류 미비
- 크록스 미집행 관련 서류 미비
- BB탄총 감액에 관한 소명서 미제출
- 위약금 감액에 대한 서류 미비
- 무대 설치비 및 연예인 섭외비용에 대한 증빙 미흡
- 2학기 예산안 미공개 확인

■ 사유

- 총학생회비 이중 납부자 명단 미흡
 - 결산안 상 환불자 54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한 지출 증빙물에는 39인에 대한 이체 내역만 첨부됨. 거래내역서 상에서 추가로 환불받은 15인에 대한 사항이 확인 가능하나, 지출 증빙물 내에는 이에 관해 미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역에 관한 추가 제출이 필요함.
- 일부 세목에 대한 증빙물 상 구매 세부 내역 미비
 - 재생토너, 주차권, 간식행사 크라프트 용기, 간식행사 식자재(증빙물 첨부지 25번)에 대하여 물품의 세부 내역이 증빙물 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각 세목에 대한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한 물품의 목록 전체와 결제 총액이 확인된다면 학생회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기에 이에 관해서는 증빙물로 인정하기로 감사운영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나, 앞서 언급된 세목에 대한 증빙물 내에서는 물품의 구매 내역 전체에 관해서도 확인이 불가함. 따라서 해당 지출에 관한 증빙물을 인정하기 어려움.
- 카시오 시계 세목 변경 관련 서류 미비

- 세목 '[G마켓] A158WA-1D 키얼스틴 빈티지모델 진품 새제품'이 '[쿠팡] 카시오 사각레트로 빈티지 프리버클 공용 전자시계'로 변경된 것이 확인됨. 세목의 변동은 추가경정을 거쳐야하며(9월 25일 전파된 '감사 관련 안내 사항' 참조)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산안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결산안 내에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 크룩스 미집행 관련 서류 미비

- 제1차 추가경정 당시 심의받은 '[쿠팡] 크룩스 남녀공용 바야밴드 클로그 205089' 세목에 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없으며, 미집행에 관한 서류 역시 제출하지 않음. 행사의 내용 변동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예결산안 변동사항 소명서를 통해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BB탄총 감액에 관한 소명서 미제출

-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심의받은 세목 '[쿠팡] 건스탐 베레타 M92FS BB탄총 블랙'의 단가가 예산안보다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나, 예결산안 변동사항 소명서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감사설명회 당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생회장의 "추가경정은 변동사항 소명서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관한 질의에 "그렇다"라 답변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되나, 해당 발언은 "추가경정을 거쳐 증액된 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도이며, 추가경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서 재차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변동사항 소명서 작성 대상임. 따라서 소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위약금 감액에 대한 서류 미비

-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심의받은 푸드트럭 업체 위약금에 관해 예산안 상 600만원에서 결산안 상 200만원으로 감액됨. 해당 내용 및 사유에 관해 제2차 감사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동사항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무대 설치비 및 연예인 섭외비용에 대한 증빙 미흡

- 본예산안에서 심의받은 '무대 설치비 및 연예인 섭외비용'에 관해 입출금 내역서 및 지출 증빙물 상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변동사항에 관한 사유 역시 서류를 제출하였음. 허나 지출 증빙물이제 확인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총학생회칙 재정운용세칙]상 '간이영수증'에 해당함. 해당 세칙에서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금액은 전체 지출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발급된 별도의 계산서, 영수증 등이 없는 상황에서 3천만원에 대한 입금처가 업체라는 증빙 역시 없기에 현재 제출한 서류만으로 해당 집행에 관한 투명함을 입증하기 어려움. 따라서 세금계산서 내지는 계산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업체에게 집행되었다 입증할 필요가 있음.

● 2학기 예산안 미공개 확인

- 총학생회칙에 의거, 학생자치기구의 예산안은 필수 기록물로 지정되어 재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하나 공개되지 않음. 따라서 감사운영세칙 제37조 제4항 제5호 “재정 질서 훼손 행위”로 판단되어 경고 1회 부여 예정. 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산안이 공개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재고 후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함.

■ 결론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함.

1. 총학생회비 이중 납부 환불자 중 누락된 환불자에 대한 지출 증빙물 추가 제출
2. 일부 세목에 대한 증빙물 상 구매 세부 내역 제출
3. 카시오 시계 세목 변경 관련 서류 제출(예비비로 집행한 것일 경우, 결산안 내에 예비비 집행에 관해 표기)
4. 크룩스 미집행 관련 변동사항 소명서 제출
5. BB탄총 감액에 관한 변동사항 소명서 제출
6. 위약금 감액에 대한 변동사항 소명서 제출
7. 무대 설치비 및 연예인 섭외비용에 대해 보다 공신력이 있는 증빙물 추가 제출

2025년 12월 8일

신한대학교 제1대 감사운영위원회